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희주

전화 031-8053-4351

## 보도자료

2024. 2. 16.(금)

### 제목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한 A회사 전직 연구원 등 구속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A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는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 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임

\* A회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음

- A회사의 전직 연구원 등이 A회사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한 후
- 중국 C회사와 계약을 맺어 A회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고,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공장 설립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냄

●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B회사 대표(A회사 전직 연구원) 등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하고, 중국 수출을 위해 피고인들이 절취한 A회사 소유의 진공펌프 부품 47종 1만여 개를 압수하였으며, 이들 일당이 숨겨둔 노트북, 외장하드를 압수하는 등 유출된 A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하여 추가 범행을 차단함

● 앞으로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 I 사건관계인

## ● 피고인

| 순번 | 피고인 | 직책 및 역할   | 처분                         |
|----|-----|---|----------------------------|
| 1  | ㄱ○○ | - B회사 대표, A회사 전직 연구원<br>- B회사 경영 총괄, 피해회사 기술자료 이용하여 부품 복제 | '24. 2. 16.<br>직접 구속<br>기소 |
| 2  | ㄴ○○ | - B회사 대표, A회사 전직 차장<br>- B회사 중국 영업 및 연락 총괄                |                            |
| 3  | ㄷ○○ | - B회사 개발팀장, A회사 전직 연구원<br>- 피해회사 기술자료 이용하여 부품 복제          | '24. 2. 16.<br>불구속<br>기소   |
| 4  | ㄹ○○ | - B회사 생산팀장, A회사 전직 부장<br>- 중국 현지공장 설립, 생산기술 이전 담당         |                            |
| 5  | ㅁ○○ | - B회사 수출담당, A회사 전직 차장<br>- 부정취득한 피해회사 부품, 제작기구 중국 수출 담당   |                            |
| 6  | ㅂ○○ | - B회사 투자자, A회사 자재파트 부장<br>- A회사에 재직하면서 ㄱ○○에게 기술자료 등 유출    |                            |
| 7  | ㅅ○○ | - A회사 해외CS팀 과장<br>- A회사 부품을 절도하여 ㄴ○○에게 유출                 |                            |
| 8  | ㅇ○○ | - A회사 영업파트 과장<br>- A회사 거래처 등 납품자료를 ㄴ○○에게 유출               |                            |
| 9  | ㅈ○○ | - A회사 생산관리팀 차장<br>- A회사 부품을 절도하여 ㄱ○○에게 유출                 |                            |
| 10 | ㅊ○○ | - A회사 자재팀 과장<br>- A회사 부품을 절도하여 ㄱ○○에게 유출                   |                            |

## ● 피해회사 A회사

-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관련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연 매출액 4,729억 원), 진공펌프 단일 제품만을 생산하는 전문기업
- ※ 진공펌프 제조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여 중국에 연 2천억 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함

## ● 중국 C회사

- 디스플레이 패널용 재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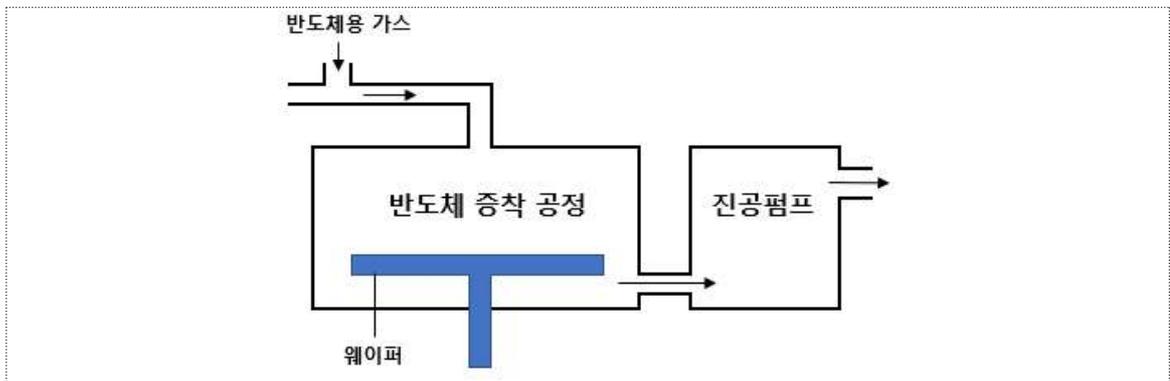
## II

## 공소사실 요지

### ● A회사의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유출

- '22. 8.~'23. 3. ㄱOO은 수 차례에 걸쳐 A회사의 진공펌프 부품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유출 [업무상배임]

####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개요>



\* 본건 진공펌프는 반도체 공정 중 CVD 공정(Chemical Vapor Deposition, 반도체용 화학가스를 반응시켜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박막을 씌우는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해당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진공흡입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함

### ● A회사의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진공펌프 관련 기술정보 부정취득

- '23. 3.~5. ㄱOO, ㄴOO, ㄷOO 등은 A회사의 전·현직 직원인 ㄴOO 등으로부터 진공펌프 설계도면, 공장 레이아웃 등 기술정보 부정취득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23. 7.~10. ㄱOO, ㄴOO 등은 A회사의 현직 직원인 ㄱOO 등과 공모하여 A회사 소유의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의 부품 1만여 개를 절취 [절도]

### ● 중국 C회사에 A회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고, 진공펌프 부품을 수출하는 등 부정사용

- '23. 5.~10. ㄱOO, ㄴOO, ㄷOO 등은 부정취득한 A회사의 진공펌프 설계도면, 부품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여 복제품 개발에 사용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III

## 수사 경과

- '23. 8.            검찰, A회사 진정 접수
- '23. 11.           B회사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3. 11.~12.       관련자들 조사
- '24. 1. 30.        B회사 대표 ㄱ○○, ㄴ○○ 각 구속
- '24. 2. 16.        ㄱ○○, ㄴ○○ 구속 기소 / 개발팀장 등 8명 불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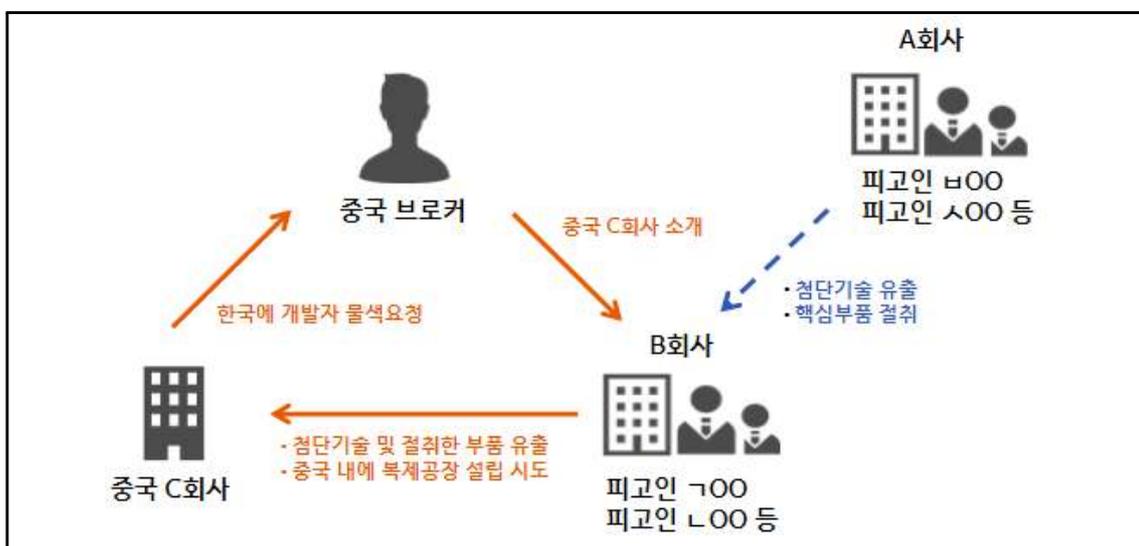
### IV

## 수사의의 및 향후 계획

#### □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업체 전직 연구원이 주도한 기술 유출 범행의 전모 규명

- 범행을 주도한 ㄱ○○는 A회사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진공펌프 제품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도면 등을 빼들려 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함
- 중국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자본으로 A회사의 진공펌프를 복제하여 대량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로 계획함

#### <범행 개요도>



-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공장 레이아웃, 진공펌프 부품, 부품 설계도면 등은 재직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A회사 직원들을 포섭하여 취득하였음

□ **중국 현지에 복제공장을 설립하려는 시도 차단하고 추가 범행 방지**

- 당청은 진정서 접수 직후 수사를 개시하고, 적시에 압수수색하여 B회사 창고에서 중국 수출을 위해 보관 중이었던 A회사의 진공펌프 부품을 압수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함

<중국 수출 대기 중 압수된 피해회사 진공펌프 부품 사진>



-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회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중국에서 공장 설립을 진행하던 직원들을 급히 귀국시킴
  - 반도체 장비 공장이 중국에서 그대로 복제되어 대량 생산될 경우 피해가 기업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검찰은 주범 구속 후 피고인들이 숨겨 두었던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압수하여 A회사의 기술자료를 회수하고, 추가 범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 기술정보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 예정

-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은 연구원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모럴 해저드’ 성향이 강하고, 처벌 또한 미약하다는 인식이 만연한바, 이번 사례가 업계의 병폐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본건은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첨단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 및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인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